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 침해피해자 보호기금 설치〉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5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망 침해피해자 보호기금 설치근거 신설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15.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

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 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 침해피해자 보호기금 설치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 보호기금(이하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11 신설).
-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 관리·운용함.
- 기금의 재원은 동 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가산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함.
- 기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함.
- 과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11(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 보호기금의 설치) 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

현행	개정안
	<u>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u> <u>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제48조의8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2. 제48조의7에 따라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3. 제76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4.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u>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u>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u>

현행	개정안
	1. <u>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u> 2. <u>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u> 3. <u>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금 지급</u> 4. <u>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u> 5. <u>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 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 한 지원</u> 6. <u>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u> 7. <u>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예방 교육·홍 보 및 권리구제 지원</u> 8. <u>침해사고 피해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u> 9. <u>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u>

현행	개정안
	<u>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⑥ <u>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00호)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제48조의7)와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제도(제48조의8)를 도입하고, 과기부장관에게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보급(제48조의9)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내용·결과를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제48조의10)하도록 하는 등 최근 잇따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및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¹⁾).

- 개정안은 신설되는 이행강제금·과징금·가산금과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를 통해 침해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분쟁조정·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 침해사고와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의 부담에 그칠 경우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는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금 신설을 통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기금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에 관한 기준²⁾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 ①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것, ②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기존의 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가산금, 과태료,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나, 이행강제금·과징금 등의 징수·수납액은 기업의 시정명령 미이행 여부 및 침해사고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과징금·가산금은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향후 예상 수입실적에 대한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동 재원을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입 규모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³⁾.
- 또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바이러스·스미싱 등 피해에 대한 상담(118 상담 서비스) 제도’,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재발방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해 기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존재하므로, 기존 사업의 보완·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침해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3) 참고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재원이 유사한 구조이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일반적·상시적 수요와 벌금 집행액이라는 비교적 넓은 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음.

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법률지원과는 달리,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급부행정⁴⁾의 일환으로 행하는 공적 재정지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배상⁵⁾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제재금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금 또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이 사업자의 책임을 대체·경감하거나 일반 국민이 그 책임을 일부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범위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⁶⁾.

4) **급부행정**(給付行政) :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향상 증진에 기여하는 공행정의 활동. 급부행정의 개념에 포섭되는 공행정의 활동범위로서는 ① 공급행정 ② 사회보장행정 ③ 자금보조행정이 있음(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셋째,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과징금 수입의 경우 과징금 부과 이후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과징금 환급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500호) 제48조의8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므로 부과 이후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과기부장은 과징금의 기금 편입 후 기금운용계획과 관계 없이 환급해야 하고⁷⁾,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 함⁸⁾.

- 따라서 과징금이 기금에 편입된 후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금의 가용재원이 감소하거나 당초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차입금 등 재원의 대체조달 근거를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7) 「국고금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6. 10. 1.][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필요해 보임.

- 넷째,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개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해당 법률이 추가되어야 하므로⁹⁾,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침해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DDoS 공격, 랜섬웨어 감염,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개별 이용자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재정당국과의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활용하여 국민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 목적의 통합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의

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금이 중복 설치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5